

공결 및 결석 규정

제정 1995. 03. 01.

개정 2024. 02. 20.

제1 조(목적)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의 공결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단, 신학대학은 제외)[개정 2011.8.29]

제2 조 [삭제 2018.3.1.]

제3 조(결석 허용) 교과목별 결석 허용 기준은 수업시간의 4분의 1미만으로 한다. 다만, 공결로 인한 결석은 예외로 한다. [개정 2016.10.14]

제4 조(공결) ① 공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 총장이 허가한 결석을 말한다.
[개정 2016.10.14]

호	인정 사유	인정기간
1	직계존속 및 배우자 사망	사망당일을 포함한 5일 이내 (토/일요일, 공휴일 포함)
2	형제, 자매 사망	사망당일을 포함한 3일 이내 (토/일요일, 공휴일 포함)
3	본인의 결혼	5일 이내
4	징병검사, 예비군, 병무에 관한 사항	통지서에 명기된 일자
5	본인입원	질병, 사고로 인한 입원 (2주 이내 인정, 학기별 1회만 인정)
6	국가, 지방자치단체의 행사, 학내외 특별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	행사기간
7	여학생 생리	매월1회 (학기별 4회 제한,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음) (단,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은 해당 없음)
8	법률로 정해진 감염병으로 인해 별도 관리(격리)가 필요한 경우	진단서에 표기된 기간
9	장애학생의 신체 악화 및 고통으로 인한 병원 진료	진료기간
10	교육과정설치학과의 교육실습 및 교과 과정에 의하여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	실습기간
11	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허가기간

② 전항의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.[개정 2016.10.14]

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할 때는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증빙서류와 공결 허가원을 지도 교수 및 학과(부)장의 동의를 받아,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제출된 공결 허가원은 교무처장이 최종

승인한다. 단, 제7호에 해당되어 공결을 원하는 자는 종합포탈정보시스템 '생리공결신청서'를 작성하여 출력 후 공결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교·강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. <개정 2016.10.14., 2020.03.01., 2021.5.1.>

④ 교·강사는 공결 신청 학생에게 공결 대체과제를 부여 할 수 있다. <신설 2021.5.1.>

제5조(공결의 처리) ① 공결은 학기말 시험 자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② 학과(부) 단위로 실습에 참가하여 교무처장이 휴강으로 인정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실습에 참가하지 아니한 학생이라도 인정한다. <개정 2020.03.01.>

제6조(공결 허용일) [삭제 2016.10.14]

제7조(공결의 제한) 공결일수가 해당 학기 수업시간의 6분의 1이상을 넘을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4조 1항의 7~11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[개정 2016.10.14]

제7조의2(학기 중 취업 학생의 출결관리) ① 학기 중 취업 학생이라 함은 111학점이상 취득하여 당해 학기에 졸업이 가능한 자로 한한다. <신설 2016.11.16., 개정 2020.03.01.>

② 학기 중 취업 학생은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(근로확인자료 등) 및 수업보충계획서와 담당교수가 요구하는 과제 및 과제수행 결과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[신설 2016.10.14]

③ 학기 중 취업 학생은 제7조(공결의 제한)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 [신설 2016.10.14]

제8조(출석부의 정정) 출석부는 사후에 정정할 수 없다.

제9조(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)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하여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성적처리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.

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자료 등을 제공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. <신설 2024.02.20.>

부칙

제1조(시행일) ①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 규정은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○ 제1 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7조의2)은 2016년 10월 14일부터 시행 하되,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칙

제1 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7조의2)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하되,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칙

제1 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조)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4조, 제5조, 제7조의2)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○ 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4조)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9조)은 202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하되,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○